

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추가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

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범죄예방 및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, 공고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4월 16일

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

- 아 래 -

1. 설치목적

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 청사 내 범죄예방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추가설치 필요

2. 관련근거

- 가.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제한)
- 나.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- 다.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
3. 설치장소 및 대수

- 가. 본관 승강기 내 각1대(총4대)
- 나. 구치감동 승강기 내 1대
- 다. 구치감동 지하1층, 1층, 2층 복도 각 1대(총3대)

4. 행정예고(공고)기간 : 2024년 04월 16일~2024년 05월 05일

의견제출 기간 : 2024년 04월 16일~2024년 05월 05일

5. 공고방법 : 안양지청 홈페이지(<http://www.spo.go.kr/anyang/>)

6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(2024.04.16 ~ 2024.05.05.)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붙임)를 작성하여 방문, 우편, FAX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기관,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방문, 우편 또는 FAX(031-470-4274)

라. 보내실 곳 : (우)1405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52 수원지방검찰청
안양지청 총무과 재무팀

마. 문의사항 안내 :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 재무팀(031-470-4520)

※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